#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04

발의연월일: 2025. 1. 22.

발 의 자:이연희·박상혁·허종식

한민수 · 김남희 · 이수진

복기왕 • 윤종군 • 박 정

이정문 • 문진석 • 이광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2·29 여객기참사사고의 사례와 같이 사고의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토교통부 직원이 사고조사에 관여할 경 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셀프조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경우 사고조사 결과를 조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 공개함에 따라 사고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조사과 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고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에"를 "국무조정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무총리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사고조사 결과의 공개) ① 위원회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사고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의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그 방법과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의 설치) ① 항공・철도사고등	의 설치) ①
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	
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국토교통부에</u> 항공·철	<u>국무조정실에</u>
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② <u>국무총리는</u>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	
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	2
렁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u>국토교통부장관이</u> 위촉한다.	<u>국무총리가</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28조의2(사고조사 결과의 공개)
	① 위원회는 제29조에도 불구
	하고 사고조사의 투명성을 제
	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
	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영향
	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의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 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그 방법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